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 2016. 6. 10.
발 의 자 : 김윤정 위원 외 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휘장 규정」의 개정으로 한글을 사용한 의회 휘장으로 바뀜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의회 휘장을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전환에 따라 법령에 부합하도록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회 휘장 "議" 를 "의회" 로 개정(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개정(별지 제5호, 제6호)

- 별지 제5호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대체
- 별지 제6호 표창대장의 "주민등록번호" 를 "생년월일" 로 대체

3. 예산조치 : 필요없음

4. 입법예고 : 필요

5.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휘장 규정」 제3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6. 개정조례(안) : 별첨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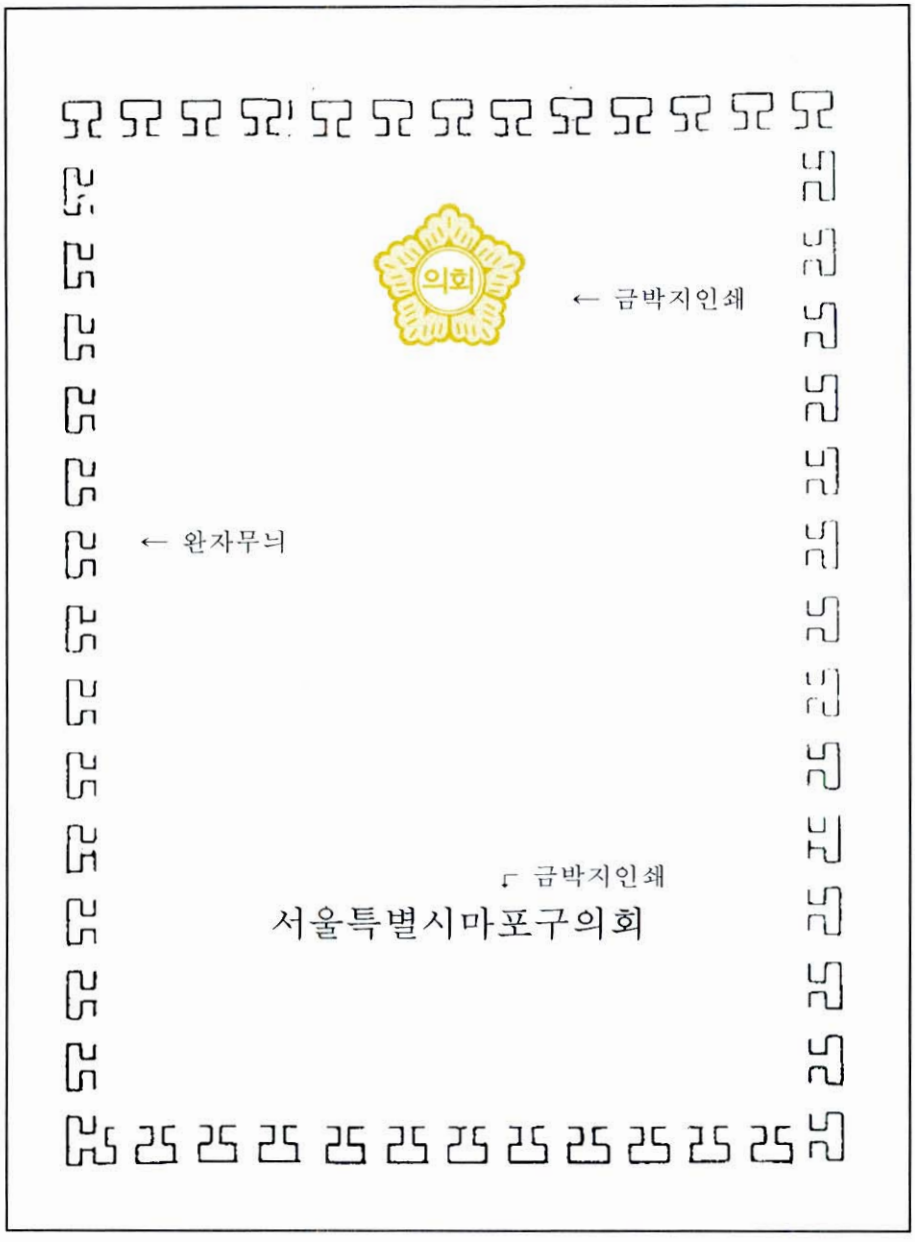

■ [별지 제2호 서식]

← 금박지인쇄

← 금박지인쇄

제 호

표 창 장

← 금색인쇄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305mm×450mm)

■ [별지 제3호 서식]

← 금박지인쇄

← 금박지인쇄

제　　호

상　　장

← 금색인쇄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305mm×450mm)

■ [별지 제4호 서식]

← 금박지인쇄

← 금박지인쇄

제 호

감 사 장

← 금색인쇄

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의장

(305mm×450mm)

■ [별지 제5호 서식]

공 적 조 서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본 적			
주 소		직 업		직위	
추 천 훈 격					
공 적 사 항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직 위 성 명 (인)					

■ [별지 제6호 서식]

표 창 대 장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번호	표창 종별	표창 년월일	피 표 창 자				검인
			성 명	소속 또는 주소	직 위	생년월일	